

# 12월말 결산법인 2002년 법인세 신고안내

자료제공 : 국세청 납세홍보과

## 신고대상 법인

- 사업연도가 2001.12월말로 종료되는 영리법인 및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

## 신고기한 : 2002년 4월 1일

- \*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이내이나, 금년은 신고 마감일이 공휴일이므로 다음날까지 연장

## 이번 신고시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

### 정규지출증빙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율 인하

법인이 경비 지출시 정규지출증빙(신용카드매출전표, 세금계산서, 계산서)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의 10%를 가산세로 부과하였으나 금년에 신고하는 2001. 12월말 법인부터는 가산세율을 거래금액의 2%로 인하

### 접대비는 법인명의 신용카드 사용분만 인정

1회에 지출한 접대비가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만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, 법인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실제 접대비를 지출한 업소가 아닌 다른 가맹점(위장가맹점 등)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손비 처리할 수 없음.

### 중소기업 판정기준 범위 확대

종전에는 중소기업 해당업종으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와 자산총액의 기준중 하나라도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서 제외하였으나, 2001. 1.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·자본금·매출액 중 하나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기준 이내일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됨.

### 정규지출증빙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율 인하 주요 내용

종 전	개 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법인이 재화·용역의 공급대가 지급시 - 신용카드매출전표, 세금계산서, 계산서를 지출증빙 으로 수취·보관하지 않은 경우 - 미수취 금액의 10%를 가산세로 적용</li>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미수취금액의 2%를 가산세 적용 (8%P 인하)</li></ul>

### 중소기업의 “결손금 소급공제기간” 확대 주요 내용

종 전	개 정
○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은 결손금을 「직전과세연도」 과세표준에서 소급공제 하여 직전 연도에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	○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기간을 「직전 1년」에서 「직전 2년」으로 확대

단, 다음 하나의 기준 이상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

- 종업원 수 1,000명, 자기자본 1,000억, 매출액 1,000억원

것을 2001.12.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폐지  
따라서, 금번 신고대상인 12월말법인은 이번 신고시부터 대차대조표 공고의무가 없으며 무공고시에도 가산세를 물지 않아도 됨.

### 중소기업의 “결손금 소급공제기간” 확대

결손금 소급공제 대상기간을 직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여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

### 출자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

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은 이미 법인세를 납부한 소득이므로 일정한 비율만큼 과세하지 아니함.

합병 등을 통한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

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합병시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 결손금을 승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.

또한, 피합병법인 및 분할법인의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 등에 승계되지 아니하여 합병 등에 애로사항이 있었으나 2001. 12. 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·분할하는 분부터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세무조정사항은 대부분 승계할 수 있도록 하였음. 

출자대상 법인	지분비율	익금불산입율
상장·등록법인	30% 초과	50%
	30% 이하	30%
비상장법인	50% 초과	50%
	50% 이하	30%

### 대차대조표 공고의무 및 불이행 가산세 폐지

자산총액 70억원 이상(외부감사대상)법인은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대차대조표를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하고 불이행시는 법인세 산출 세액의 1%와 수입금액의 0.004% 중 적은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던

### 이번 신고부터 승계가 가능한 세무조정사항

퇴직급여충당금 및 대손충당금 한도액, 유가증권 평가손익,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 및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장기채권 등의 현재 가치할인차금, 은행업회계처리준칙에 의한 자금보증충당금.